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

당사자
1. 남편: 홍길동 (주민등록번호: 000000-0000000, 주소: 서울시 강남구...)
2. 아내: 김영희 (주민등록번호: 000000-0000000, 주소: 서울시 서초구...)

제1조 (목적)
본 합의서는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재산 목록 및 평가액)
1.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(시가 10억원)
2. 예금 및 적금 (총 1억원)
3. 자동차 (시가 3천만원)
4. 주식 (시가 5천만원)
5. 퇴직금 수급권 (약 2억원)

제3조 (분할 방법)
1.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는 아내에게 귀속한다.
2. 예금 및 적금은 남편에게 귀속한다.
3. 자동차는 남편에게 귀속한다.
4. 주식은 아내에게 귀속한다.
5. 퇴직금은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남편 70%, 아내 30%의 비율로 분할한다.

제4조 (이행 방법 및 시기)
1.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혼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.
2. 예금 및 주식의 명의변경은 이혼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한다.
3. 퇴직금은 수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약정된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.

제5조 (이행 지체에 대한 제재)
본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지체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지체된 금액의 연 8%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한다.

제6조 (세금 부담)
재산 이전에 따른 세금은 각 재산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.

20XX년 XX월 XX일

남편: 홍길동 (서명 또는 인)
아내: 김영희 (서명 또는 인)